

#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4. 04.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3.“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4.“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5.“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8.“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9.“현업종사자”란 청소, 경비, 조리, 통학 보조 업무,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0.“작업장”이란 종사자가 근무하는 본교 사업장 내 근무 공간을 말한다.
- 11.“실무부서”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제반업무를 작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안내할 수 있는 본교 「처무규정」 상의 전 부서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본교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업무를 우선 고려하여 조치한다.

- ②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부서장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본교는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제반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종사자는 본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본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고, 추가적으로 각 건물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물안전책임자 및 실별안전관리자를 둔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본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행·재정부총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의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1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2) 본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 일시 작업 중단
2. 해당 작업장 일정기간 폐쇄
3. 위 호의 해제시기는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확보 후 해제
4. 종사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부서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등을 매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무부서 소관 작업장에서 매뉴얼대로 조치되는지 반기별 점검한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 중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와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지 반기별 점검한다.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실무부서가 관련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고, 실무부서는 관련법 이행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무부서가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별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 각 조항의 주요 점검 및 조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관련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 부서별 부서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1. 교통안전 및 보안 : 총무관리처 총무팀장(서울C) / 관리팀장(국제C)
2. 시설안전 : 총무관리처 관리팀장
3. 비품관리 : 총무관리처 관재팀장
4. 공연안전 : 총무관리처 시설운영팀장(서울C) / 체육시설운영단장(국제C)
5. 학생안전 :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장
6. 기숙사안전 : 생활관장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관련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지시 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교 소속 종사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하“수급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주의 및 경고 조치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부서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 일시 작업 중단
3. 위 제2호의 해제시기는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확보 후 해제

제9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관련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건물안전책임자) ① 각 건물의 정 책임자는 해당건물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단과대학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행정실장이 된다.

② 건물안전책임자는 각 지역, 각 건물, 각 실의 화재, 도난, 폭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별안전관리자) ① 각 대학(학부) 및 각 부서별 건물안전책임자는 관장하고 있는 건물의 실별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별 안전관리자를 정·부로 지정한다.

- ② 실별안전관리자는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① 본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종사자위원 각 10명 이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캠퍼스별로 각각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사용자위원과 종사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사용자측, 종사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④ 서울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사용자위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서울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종사자위원은 직원 노조위원장, 종사자 등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13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종사자위원 각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010·5011·5012·5013·5014·5015·5016·5017·5018·5019·5020·5021·5022·5023·5024·5025·5026·5027·5028·5029·5030·5031·5032·5033·5034·5035·5036·5037·5038·5039·5040·5041·5042·5043·5044·5045·5046·5047·5048·5049·5050·5051·5052·5053·5054·5055·5056·5057·5058·5059·5060·5061·5062·5063·5064·5065·5066·5067·5068·5069·5070·5071·5072·5073·5074·5075·5076·5077·5078·5079·5080·5081·5082·5083·5084·5085·5086·5087·5088·5089·5090·5091·5092·5093·5094·5095·5096·5097·5098·5099·50100·50101·50102·50103·50104·50105·50106·50107·50108·50109·50110·50111·50112·50113·50114·50115·50116·50117·50118·50119·50120·50121·50122·50123·50124·50125·50126·50127·50128·50129·50130·50131·50132·50133·50134·50135·50136·50137·50138·50139·50140·50141·50142·50143·50144·50145·50146·50147·50148·50149·50150·50151·50152·50153·50154·50155·50156·50157·50158·50159·50160·50161·50162·50163·50164·50165·50166·50167·50168·50169·50170·50171·50172·50173·50174·50175·50176·50177·50178·50179·50180·50181·50182·50183·50184·50185·50186·50187·50188·50189·50190·50191·50192·50193·50194·50195·50196·50197·50198·50199·50200·50201·50202·50203·50204·50205·50206·50207·50208·50209·50210·50211·50212·50213·50214·50215·50216·50217·50218·50219·50220·50221·50222·50223·50224·50225·50226·50227·50228·50229·50230·50231·50232·50233·50234·50235·50236·50237·50238·50239·50240·50241·50242·50243·50244·50245·50246·50247·50248·50249·50250·50251·50252·50253·50254·50255·50256·50257·50258·50259·502510·502511·502512·502513·502514·502515·502516·502517·502518·502519·502520·502521·502522·502523·502524·502525·502526·502527·502528·502529·502530·502531·502532·502533·502534·502535·502536·502537·502538·502539·502540·502541·502542·502543·502544·502545·502546·502547·502548·502549·502550·502551·502552·502553·502554·502555·502556·502557·502558·502559·502560·502561·502562·502563·502564·502565·502566·502567·502568·502569·502570·502571·502572·502573·502574·502575·502576·502577·502578·502579·502580·502581·502582·502583·502584·502585·502586·502587·502588·502589·502590·502591·502592·502593·502594·502595·502596·502597·502598·502599·5025100·5025101·5025102·5025103·5025104·5025105·5025106·5025107·5025108·5025109·5025110·5025111·5025112·5025113·5025114·5025115·5025116·5025117·5025118·5025119·50251100·50251101·50251102·50251103·50251104·50251105·50251106·50251107·50251108·50251109·502511010·502511011·502511012·502511013·502511014·502511015·502511016·502511017·502511018·502511019·5025110100·5025110101·5025110102·5025110103·5025110104·5025110105·5025110106·5025110107·5025110108·5025110109·5025110110·5025110111·5025110112·5025110113·5025110114·5025110115·5025110116·5025110117·5025110118·5025110119·50251101100·50251101101·50251101102·50251101103·50251101104·50251101105·50251101106·50251101107·50251101108·50251101109·50251101110·50251101111·50251101112·50251101113·50251101114·50251101115·50251101116·50251101117·50251101118·50251101119·502511011100·502511011101·502511011102·502511011103·502511011104·502511011105·502511011106·502511011107·502511011108·502511011109·502511011110·502511011111·502511011112·502511011113·502511011114·502511011115·502511011116·502511011117·502511011118·502511011119·5025110111100·5025110111101·5025110111102·5025110111103·5025110111104·5025110111105·5025110111106·5025110111107·5025110111108·5025110111109·5025110111110·5025110111111·5025110111112·5025110111113·5025110111114·5025110111115·5025110111116·5025110111117·5025110111118·5025110111119·50251101111100·50251101111101·50251101111102·50251101111103·50251101111104·50251101111105·50251101111106·50251101111107·50251101111108·50251101111109·50251101111110·50251101111111·50251101111112·50251101111113·50251101111114·50251101111115·50251101111116·50251101111117·50251101111118·50251101111119·502511011111100·502511011111101·502511011111102·502511011111103·502511011111104·502511011111105·502511011111106·502511011111107·502511011111108·502511011111109·502511011111110·502511011111111·502511011111112·502511011111113·502511011111114·502511011111115·502511011111116·502511011111117·502511011111118·502511011111119·5025110111111100·5025110111111101·5025110111111102·5025110111111103·5025110111111104·5025110111111105·5025110111111106·5025110111111107·5025110111111108·5025110111111109·5025110111111110·5025110111111111·5025110111111112·5025110111111113·5025110111111114·5025110111111115·5025110111111116·5025110111111117·5025110111111118·5025110111111119·50251101111111100·50251101111111101·50251101111111102·50251101111111103·50251101111111104·50251101111111105·50251101111111106·50251101111111107·50251101111111108·50251101111111109·50251101111111110·50251101111111111·50251101111111112·50251101111111113·50251101111111114·50251101111111115·50251101111111116·50251101111111117·50251101111111118·50251101111111119·502511011111111100·502511011111111101·502511011111111102·502511011111111103·502511011111111104·502511011111111105·502511011111111106·502511011111111107·502511011111111108·502511011111111109·502511011111111110·502511011111111111·502511011111111112·502511011111111113·502511011111111114·502511011111111115·502511011111111116·502511011111111117·502511011111111118·502511011111111119·5025110111111111100·5025110111111111101·5025110111111111102·5025110111111111103·5025110111111111104·5025110111111111105·5025110111111111106·5025110111111111107·5025110111111111108·5025110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111108·5025110111111111111111111109·5025110111111111111111111110·5025110111111111111111111111·5025110111111111111111111112·5025110111111111111111111113·5025110111111111111111111114·5025110111111111111111111115·5025110111111111111111111116·5025110111111111111111111117·5025110111111111111111111118·5025110111111111111111111119·50251101111111111111111111100·50251101111111111111111111101·50251101111111111111111111102·50251101111111111111111111103·50251101111111111111111111104·50251101111111111111111111105·50251101111111111111111111106·50251101111111111111111111107·50251101111111111111111111108·

제17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기계인 경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시설점검) 실무부서는 시설점검(전기, 가스, 승강기, 소방 등)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파악하고 보완한다.

제19조(종사자 안전수칙) ① 실무부서는 안전보건상 유해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실무부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실무부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종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 ① 실무부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22조(안전·보건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봉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④ 제3항에 따라 본교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건설·물품·용역계약에 따른 수급인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조치) ① 각 건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안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이상유무 확인 및 작동불량시 관리팀에 개선요청

2.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구성원 규제

3. 소화기 정상 배치상태 확인

4. 개인 전열기구(전기난로, 온풍기, 전기히터 등) 사용금지

5.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확인

6. 복도 및 계단 등 피난통로와 비상구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 점검

7.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복도 및 화장실 등의 외부창문을 닫아 보온유지

8.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별안전관리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인화성이 강한 물질(종이류, 화공약품 등)을 화기로부터 철저히 이격시키고 관리

2. 각 실별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불량유무 확인

3. 퇴실 전 자체 점검을 통한 안전습관 생활화

가. 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 전원종료 및 코드분리

나. 멀티콘센트 전원차단

다. 외벽 창문 잠금상태 확인

라. 탕비실 등 수도 누수유무 확인

마. 실내 전등 소등

바. 주변 정리정돈 확인

4. 실별 개인전열기구 사용금지

5.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안시스템외의 개별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수동보조키 등)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단, 부득이하게 개별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수동보조키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실별 안전 관리책임자는 총무관리처 관리팀, 건물 안전관리책임자, 학내 보안업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별잠금장치 현황을,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고 책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즉시 제출한다.

제24조(건강진단) ① 본교는 소속 종사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소속 종사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건강진단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2.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 받은 경우

3.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에 노출되는 업무에 근로하는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검진비용은 본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소속 종사자가 건강진단 누락 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본교 소속 외 종사자는 수급인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행결과를 해당 실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25조(진단결과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 소속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치료, 안

정을 위하여 근무부서 변경, 담당업무의 변경, 병가, 휴직 등의 조치를 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본교 종사자인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교는 건강진단 결과를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③ 본교 소속외 종사자도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며 수급인등이 이행한다.

제26조(질병자 근로금지·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제외)
-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본교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 등의 종사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다.

-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④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종사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 전자메일을 통한 방법
- 2.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 3. 해당 종사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본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구입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6.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 화학물질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급 연구실책임자 및 실무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안전보건 보호구) 실무부서는 유해·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종사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 ①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본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부서 중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과 교육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 본교 소속 종사자 및 수급인등의 종사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 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본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재예방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별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본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당부서는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고조사 시 종사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본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긴급조치) ①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해당 실무부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 ② 교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방계획서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본인의 맡은 임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도하에 중립

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실무부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⑤ 본교는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36조(재해보상) ① 본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가 보상한다.

제37조(징계) ①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교에 불이익을 초래한 소속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 중요사항의 지시 및 명령에 대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불복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고의·과실 등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5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및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총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별로 평가한다.

제39조(안전보건 제안)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실무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제출된 제안사항을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2.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관련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관련 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제42조(규정의 준수 등) ① 총장 및 본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모든 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본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킨다.

####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별 잠금장치 현황

개별 잠금장치(디지털도어락, 수동보조키 등) 현황

NO	관리주체	학과	건물명	호실명	호실 번호	잠금장치 형태_1 (주출입구)	잠금장치 형태_2 (추가장치)	사용자	상시 연락처	비밀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잠금장치형태 – 디지털도어락, 수동보조키 등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경희대학교 내 각 건물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잠금장치 사용으로 인한 수집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지원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식별, 연락처, 비밀번호 수집], [관리주체의 정보를 확보하여 공간현황 관리]
  - 2) 집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 : 본인 확인 및 식별, 연락처, 비밀번호, 공간 사용 정보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자료 파기. 단, 본인에 의해 삭제 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삭제 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khu.ac.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三

동의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고 책임 확인서

사고 책임 확인서

\*소 속 : \_\_\_\_\_

\*사번(학번)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대상  
(호실명, 호실번호) : \_\_\_\_\_

상기 본인은 해당 실 개별잠금장치의 관리유지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위배사항과 화재 및 재물손상에 대하여, 일체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 및 시설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관리유지 미흡사항\*

1. 개별잠금장치 사용현황 미제출
2. 비밀번호 미제공 및 변경사항 미제출
3. 사전협의 없이 개별잠금장치 임의 설치

\*법규 위배사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총무관리처장 귀하